

특별회원 운영 내규

2023.06.30. 제정시행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연합회(이하 “대전예총”이라 한다)의 특별회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

대전예총의 ‘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 6조 특별회원’에 근거하고 있다.

제3조(가입)

개인 및 민간단체는 가입절차에 따라 신청서(별표 제1호)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며, 대전예총의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, 특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특별회원의 자격을 가진다.

제4조(기간)

특별회원은 가입승인 및 회비 납부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특별회원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,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특별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.

제5조(권리 및 의무)

- ①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대전예총 ‘조직 및 운영규정 제 7조’에 의거하여 정회원 단체의 권리인 발의 및 의결권,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
- ②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대전예총 ‘조직 및 운영규정 제 8조’에 의거하여 조직 및 운영규정과 내규를 준수하고,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,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다.

제6조(혜택)

대전예총 ‘후원, 시상, 축사 및 경조 규정’에 의거하여 별도의 비용없이 특별회원이 요청하는 행사의 후원 명칭사용, 시상 후원, 축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또한, 대전예총 예술지 ‘대전예술’에 사업, 행사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할인 된 가격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보고)

특별회원 운영에 관한 내용은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.

제8조(기타)

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예총 ‘조직 및 운영규정’의 내용을 적용하고, 필요시 대전예총 사무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.

<부 칙>

이 내규는 대전예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